



공정위 주요 심결사례

공정거래법

지주회사 및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7.18.

프리임개발 주식회사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2011집단07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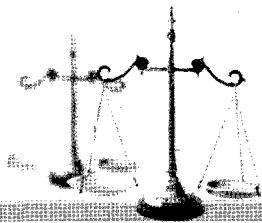
▶ 위반내용

피심인은 지주회사로서 2008. 12. 5부터 2011. 6. 10. 현재까지 자회사가 아닌 일산프로젝트 주식회사의 주식 412,000주(발행주식 총수의 6.87%)를 소유하고 있다. 일산프로젝트(주)는 피심인의 자회사인 동아건설산업(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43.33%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법 제2조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규정에 의거하여 피심인의 계열회사에는 해당하나 법 제2조 제1호의3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피심인의 자회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라 함은 지주회사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그 사업내용을 직접 지배하는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지주회사가 직접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를 제외한 기타 국내계열회사(손자회사 및 증손회사를 포함한다)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주식 취득·소유시점부터 법 위반이 성립된다. 다만, 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 각 목의 사유로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위 각목에서 규정한 유예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이후부터 법 위반이 성립된다.

피심인은 2008. 10. 1부터 2011. 6. 10. 현재까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지주회사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법 제2조 제1호의2에서 규정한 지주회사에 해당한다. 피심인은 2008. 10. 1. 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일산프로젝트(주)의 발행주식 총수의 40.2%를 소유하고 있어 일산프로젝트(주)를 자회사로 지배하고 있었다. 이후 2008. 12. 5. 피심인은 소유하고 있던 일산프로젝트(주) 주식 2,412,000주(40.2%) 중 2,000,000주(33.33%)를 피심인의 자회사인 동아건설산업(주)에 매각하여 2008. 12. 5. 이후 2011. 6. 10. 현재까지 일산프로젝트(주) 주식 412,000주(6.87%)를 소유하고 있다. 일산프로젝트(주)의 최대출자자가 피심인에서 동아건설산업(주)로 변경됨에 따라 일산프로젝트(주)는 피심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회사에서 손자회사로 그 지위가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2008. 12. 5. 이후 피심인이 일산프로젝트(주) 주식을 소유한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피심인이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행위가 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 라목에 의거 피심인이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자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2008. 12. 5.)부터 1년 이내(2009. 12. 4.)인 경우에는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심인의 자회사였던 일산프로젝트(주)가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2009. 12. 5. 이후부터 2011. 6. 10. 현재까지 피심인이 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 일산프로젝트(주)의 주식 412,000주를 소유한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에 위반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으므로, 피심인이 이 사건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일산프로젝트(주)의 주식 전부에 대한 매각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피심인이 법을 위반하여 일산프로젝트(주)의 주식을 소유한 기간이 1년 이상 경과된 점, 피심인의 경영상황(당기 순이익의 적자 등), 경기도와의 소송 진행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으로 하여금 1년 이내에 일산프로젝트(주)의 주식 전부에 대한 매각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심인은 일산프로젝트(주)의 주식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고양관광문화단지 2구역 복합시설용지 공급계약'의 상대방인 경기도와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경기



도의 동 용지공급계약 해제통보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협의가 곤란한 상황이고, 재무적 투자자 등과 체결한 계약상 재무적 투자자의 주식매도 청구에 응해야 하는 점, 재무적 투자자의 서면동의 없이 계약상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시키지 못하는 점, 외국인 투자자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보유주식을 처분할 수 없는 점 등 주식매각의 제약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이행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여해 줄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 보유에 따른 법위반 기간이 1년 6개월 경과한 상황에서 추가로 2년의 기간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법위반 해소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기도와의 용지공급계약 해제 관련 소송의 변론 종결 등으로 법원선고가 있을 것으로 보여 경기도와의 주식매각 관련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주주간 계약서' 제16조에 의하면 일산프로젝트(주)에 대한 출자법인 간의 주식 양수·양도는 다른 출자법인의 동의가 필요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임인이 이 사건 법 위반 해소를 위해 재무적 투자자 등과 협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임인이 일산프로젝트(주)의 주식 일부를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이유는 사업(고양관광문화단지 2구역 개발사업) 주간사로서 경제적 이득(개발이익)을 기대·유지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임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임인이 지주회사로서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 일산프로젝트(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17조 제4항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61조 관련 (별표 2)제1호,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III. 2. 나. (1)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피임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는 피임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가 아니면서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과징금고시 III. 2. 나. (1) (가)의 규정에 의하여 피임인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임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가 아닌 점과 위반 상태 해소에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음은 인정되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징금 면제시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임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임인의 위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법 위반행위로 인정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16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17조 제4항을 각각 적용한다.

▶ 조치내용

피임인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일산프로젝트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여야 한다. 다만, 일산프로젝트 주식회사가 피임인의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피임인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규정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임인은 과징금 115,000,000원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7. 18.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2011집단0773)

▶ 위반내용

피임인은 일반지주회사인 프라임개발(주)의 자회사로서 2009. 2. 27부터 2011. 6. 10. 현재까지 손자회사가 아닌 한국인프라개발(주) 및 (주)경기복합물류공사(이하 한국인프라개발(주) 및 (주)경기복합물류를 모두 칭할 때에는 "2개사"라 한다)의 주식을 각각 1,380,000주, 141,509주를 소유하고 있다. 한국인프라개발(주)는 프라임개발(주)의 자회사인 (주)삼안이 발행주식 총수의 56.67%를 소유한 프라임개발(주)의 손자회사이고, (주)경기복합물류공사는 한국인프라개발(주) 등 기업집단 '프라임'의 4개 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51.73%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위 2개사는 모두 피임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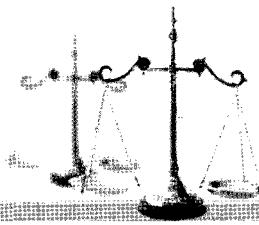


공정위 주요 심결사례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그 사업내용을 직접 지배하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자회사가, 직접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손자회사를 제외한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주식 취득·소유시점부터 법 위반이 성립되며, 다만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 각목의 사유로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각목에서 규정한 일정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부터 법 위반이 성립된다. 피심인은 2008. 10. 1부터 2011. 6. 10. 현재까지 지주회사인 프라임개발(주)에 의해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이므로 법 제2조 제1호의3에서 규정한 자회사에 해당한다. 피심인은 프라임개발(주)의 자회사로 편입된 날(2008. 10. 1.) 이후인 2009. 2. 27. 프라임개발(주)로부터 피심인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계열회사였던 한국인프라개발(주)의 주식 1,300,000주 및 (주)경기복합물류공사의 주식 141,509주를 취득·소유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2010. 3. 19. 한국인프라개발(주)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위 회사의 주식 80,000주를 추가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이 프라임개발(주)의 자회사로 편입된 날 이후인 2009. 2. 27. 이후부터 2011. 6. 10. 현재까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인 위 2개사의 주식을 소유한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의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에 위반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상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으므로, 피심인이 이 사건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소유하고 있는 2개사 주식 전부에 대한 매각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피심인이 법을 위반하여 2개사 주식을 소유한 기간이 2년 이상(2010. 3. 19. 취득분은 1년 이상)이 도과된 점과 법 위반기간 동안 법위반 상태 해소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심인의 경영상황(당기순이익 흑자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으로 하여금 6개월 이내에 2개사의 주식 전부에 대한 매각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주)경기복합물류공사의 경우 그 최대 출자지분을 가진 금광기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과 같은 사정으로 피심인 소유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한국인프라개발(주)의 최대주주이자 프라임개발(주)의 자회사인 (주)삼안을 매각함으로써 2개사가 기업집단 '프라임'의 계열회사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방안이 비교적 실현가능성이 높은 방안이긴 하나 2010년 11월경까지 진행되던 매각방안이 무산되어 다시 새로운 매수자를 물색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시정명령 이행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허여해 줄 것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심인이 (주)삼안 매각 추진 등으로 법위반 상태의 해소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법위반 기간이 2년 이상(2010. 3. 19. 취득분은 1년 이상) 도과한 시점에서 (주)삼안 매각 이외에 2개사 주식의 제3자 매각 또는 (주)삼안으로의 매각, 피심인과 (주)삼안 간 한국인프라개발(주) 주식 보유비율의 50:50 유지 등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음에도 법 위반 상태 해소를 위해 적극적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피심인이 법 위반에 해당함을 알고도 2개사 주식을 매입한 점, 피심인의 주장처럼 2년 이상의 시정명령 이행 기간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법 위반을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심인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인 위 2개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17조 제4항 및 제55조의 3, 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61조 관련 [별표 2] 제1호,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III. 2. 나. (1)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한편 피심인은, 과징금고시 III. 2. 나. (1)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행위사실이 위반사업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가 아니면서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므로 과징금이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행위사실이 과징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피심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가 아닌 점과 법위반 상태 해소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과징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바,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심인의 위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법 위반행위로 인정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법 제16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17조 제4항을 각각 적용한다.

▶ 조치내용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피심인이 소유하고 있는 한국인프라개발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경기복합물류공사의 주식 전부를 매각하여야 한다. 다만 피심인이 프라임개발 주식회사의 자회사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한국인프라개발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경기복합물류공사가 피심인의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한다. 피심인은 과징금 610,000,000원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거래상지위남용행위

8.2

(주)티브로드홀딩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2011서감0867)

▶ 위반내용

피심인은 2007년 8월 ~ 2008년 11월 기간 중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지에스홈쇼핑, 주식회사 우리홈쇼핑, 주식회사 현대홈쇼핑(이하 각 홈쇼핑사업자를 지칭할 때에는 “주식회사”는 생략하며, 3개 홈쇼핑사업자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3개 홈쇼핑사”라 한다)에게 자신의 계열회사인 동림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동림관광개발”이라 한다)가 춘천시 지역에 건설 중인 동림컨트리클럽의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심인의 요청에 따라 3개 홈쇼핑사는 동림관광개발이 강원도지사로부터 골프장 회원모집 승인을 받은 날(2009. 12. 15.)보다 9개월 내지 15개월 정도 전인 2008. 9. 12. ~ 2009. 3. 5. 기간 중에 총 66억 원을 동림관광개발에 사전예치금 명목으로 납입하였다. 한편, 3개 홈쇼핑사가 사전예치금을 납입하면서 동림관광개발과 각각 체결한 약정서를 보면,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할 당시 ① 예치기간 동안 연 5.22%의 수익금과 함께 예치금을 돌려받거나 ② 골프장 회원권에 대한 공개 분양 결과 모집된 회원수가 미달될 경우에 한해 입회금으로 전환하여 골프장 회원권을 우선취득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동림관광개발은 골프장 건설공사의 공정이 30% 이상 진행된 시점인 2009. 12. 15. 공개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모집된 회원이 전혀 없어 2009. 12. 29. ~ 2010. 4. 28. 기간 중 사전예치금 납입자들을 대상으로 골프장 회원권을 모집·분양하였으며, 이에 3개 홈쇼핑사는 각각 사전예치금 전액을 골프장 회원권으로 전환하여 총 6구좌를 분양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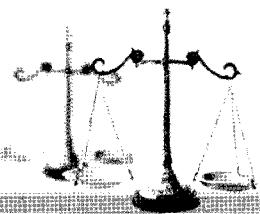
피심인이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 피심인이 상품 또는 용역의 구입을 요청할 경우 구입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 등을 기준으로, 피심인이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적어도 거래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쓱하다고 할 것인 바,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피심인에 대한 수입 의존도 등 당시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거래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대체거래선 확보의 곤란, 홈쇼핑 방송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른 높은 수입 의존도, MSO사업자로의 방송채널 송출계약 협상장구 단일화, SO사업자의 방송채널편성권 보유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홈쇼핑사업자에 대한 거래상지위가 인정된다. 피심인은 2011년 4월 현재 전국 77개 방송구역 중 21개 방송구역에서 SO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MSO사업자이며, MSO사업자들 중에서도 매출액 점유율이 약 26%에 이르는 1위 사업자이다. 또한 피심인은 영업 중인 21개 방송구역 중 15개 구역에서 독점적으로 방송사업을



공정위 주요 심결사례

하고 있어 홈쇼핑사들이 피심인으로부터 거래거절을 당할 경우 동일 지역에서는 대체거래선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홈쇼핑사들은 자신의 방송프로그램을 송출하는 방송채널환경에 따라 매출액이 40% 정도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것으로 자체분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형으로 볼 때 홈쇼핑사들의 피심인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MSO사업자는 매년 PP 사업자와 방송채널 송출계약 협상시 개별 SO사업자별로 방송채널 라인업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속 SO사업자를 지휘하는 지주회사(본사) 등의 지위에서 자신에게로 협상창구를 단일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PP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MSO사업자와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MSO사업자가 영업하고 있는 다수의 지역에서 방송채널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바, MSO사업자에 대한 PP사업자의 협상력은 더욱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MSO사업자인 피심인의 경우에도 매년 홈쇼핑사업자와의 방송채널 송출계약시 21개 지역 SO사업자별로 개별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자기의 채널전략팀에서 일괄적으로 방송채널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만약 피심인과의 방송채널 협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분포된 21개 지역에서 방송채널 사용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만큼 매출액의 감소폭도 커지게 된다. 홈쇼핑 방송 프로그램은 일단 제작되면 추가적으로 방송을 송출하는데 추가비용은 작은 반면, 수익은 송출되는 방송채널 수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또한 송출되는 방송채널 수가 같더라도 SO사업자인 피심인이 홈쇼핑사업자에게 어떤 방송채널 번호를 부여하는 지에 따라 홈쇼핑 사업자의 매출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홈쇼핑사업자 입장에서는 SO사업자와 우호적인 거래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법상 구입강제는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여기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라 함은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을 포함한다. 구입강제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구입강제로 인한 거래상대방의 피해 발생 여부,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3개 홈쇼핑사에게 구입할 의사가 없는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로 인정된다. 피심인의 방송채널편성 담당자는 3개 홈쇼핑사의 채널마케팅 담당자와 만난 자리에서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각 홈쇼핑사업자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순실 발생이 우려되지만 S급 방송채널이 교체되어 불이익을 당할 것이 예상되므로 피심인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다. 이 사건에서 3개 홈쇼핑사가 예치금을 납입한 시기, 골프장회원권의 구좌당 가격, 동림관광개발과 체결한 약정의 내용 등이 기업집단 태광산업에 속해 있는 피심인 등 9개 사업자들의 동림관광개발 지원행위와 거의 일치하는 사실로 볼 때, 피심인의 골프장회원권 구입요청 행위는 단순히 정보제공의 차원에서 제안한 행위라기보다는 동림관광개발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거래상대방에게 강제한 행위로 인정된다. 골프장 회원모집은 체시법 시행령에 따라 골프장 건설공정이 30%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회원모집계획을 승인받은 후 공개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3개 홈쇼핑사는 동림관광개발이 강원도지사로부터 골프장 회원모집 승인을 받은 날(2009. 12. 15.)보다 9개월 내지 15개월 정도 전인 2008년 9월 ~ 2009년 3월 기간 중에 골프장 회원권 구입 명목으로 사전예치금을 납입했다. 이러한 피심인의 골프장 회원모집 행위는 건설공정이 30% 이상 진행된 이후에 회원권을 분양하는 통상적인 회원모집 방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3개 홈쇼핑사가 동림관광개발에 사전예치금을 납입한 시점(2008년 9월 ~ 2009년 3월)은 회원권 가격이 급락하는 시기였다. 따라서 3개 홈쇼핑사가 골프장 회원권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동림컨트리클럽이 아니더라도 이미 골프장 건설이 완공된 다른 골프장 회원권의 매입도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완공까지 2~3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동림컨트리클럽에 사전예치금을 납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3개 홈쇼핑사가 사전예치금을 골프장 회원권으로 전환하여 취득(2010년 4월)할 당시에도 골프장 회원권 시세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합리적인 사업자라면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하는 것보다 약정서에 따라 사전예치금을 반환받는 것이 수익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므로 사전예치금을 돌려받았을 것이다. 3개 홈쇼핑사는 골프장 회원권 취득을 선택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에 더하여 이는 3개 홈쇼핑사가 거래상지위를 가진 피심인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를 수용한 것으로 밖에 달리 설명이 어렵다.

피심인은 계열회사인 동림관광개발이 건설 중인 골프장을 3개 홈쇼핑사에게 소개해 주었고, 3개 홈쇼핑사가 각각의 필요에 따라 동림관광개발에 예치금을 사전에 납입하고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위에서 보았듯이 3개 홈쇼핑사는 피심인의 골프장 회원권 구입 요청에 대하여 거절할 경우 방송채널 변경 등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전예치금을 납입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3개 홈쇼핑사의 골프장 회원권 구입이 자발적인 것이었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심인의 위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구입할 의사가 없는 골프장 회원권 구입을 강제한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향후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의하여 시정명령,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2008. 10. 24.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7호,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III. 2. 라. (1)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피심인의 위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법 위반행위로 인정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24조를, 과징금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4조의2를 각각 적용한다.

▶ 조치내용

피심인은 자기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방송채널을 이용하는 홈쇼핑사업자에게 계열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인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상품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심인은 과징금 42,000,000원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31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2010서경2273)

▶ 위반내용

피심인의 푸드컬쳐사업부 경인영업팀 직원 이○○는 2010년 3월경 위탁급식 사업자 선정을 진행하고 있던 (주)한국외환은행의 직원 김○○에게 피심인과 (주)아워홈간 기업신용등급, 위생사고 건수, 식자재의 비교 자료가 포함된 '삼성에버랜드 경쟁력 관련 자료 – 삼성에버랜드가 펼치는 프리미엄 종합 푸드서비스' 제하의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송부하였고, 피심인의 위 같은 팀 직원 양○○은 2010년 3월경 위탁급식 사업자 선정을 진행하고 있던 영풍(주)의 직원 정○○에게 이 사건 문서를 송부하였으며, 또한 피심인의 위 같은 팀 직원 김○○은 2010년 8월경 피심인의 다른 직원들을 경유하여 한국공항공사의 위탁급식 계약 담당자인 이○○에게 송부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이 사건 문서에서 자기의 기업신용등급을 'AA'로 표기하고 그와 나란히 (주)아워홈의 기업신용등급은 '無'라고 표기하였다. 피심인은 이 사건 문서에서 자기의 최근 5년간 위생사고 건수를 0건으로 표기하고, (주)아워홈은 '09년 8월 – 용인 성지고 식중독 사고'라고 표기한 후, 그와 관련된 신문기사(2009. 6. 30. 푸드투데이 – 용인 성지고교서 31명 집단 식중독 증세)를 인용하였다. 피심인은 이 사건 문서에서 '생물 식자재'의 장점(신선한 식재료 공급, 메뉴 특성에 맞는 조리 가능, 투명한 유통 및 원류관리)과 '전처리 식자재'의 단점(규격화로 인한 메뉴 특성 미반영, 영양소 유지 및 식사품질 저하, 장기간 배송으로 인하여 신선도 저하)만을 대비하여 적시하고, 단점만이 적시된 '전처리 식자재'의 사용 비율과 관련하여 '당사 10%, (주)아워홈 50% 수준'이라고 표기하였다.



공정위 주요 심결사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는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때 경쟁사업자의 고객에는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거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 포함된다. 또한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에는 품질, 규격, 제조일자, 원산지, 제조방법, 유효기간 등이 포함되며, 거래조건에는 가격, 수량, 지급조건 등이 포함된다.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는 국산품 또는 수입품인지 여부, 신용조건, 업계에서의 지위, 거래은행, 명칭 등이 포함된다. 한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계 또는 기만적인 유인행위로 인하여 고객이 오인될 우려가 있음으로 충분하고, 반드시 고객에게 오인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인이라 함은 고객의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선택 및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고, 오인의 우려라 함은 고객의 상품 또는 용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말한다 할 것이다. 기만 또는 위계가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관계에 놓이게 될 고객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피심인은 이 사건 문서 10쪽에서 자기의 기업신용등급을 'AA'로 표기하고 그와 나란히, (주)아워홈의 기업신용등급을 '無'라고 표기하였다. 기업신용등급이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그 평가를 의뢰한 자에 대하여 재무상태·사업실적 등 현재의 상황과 사업위험 등 미래의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여하는 등급으로서 법률 문언상 등급을 부여받고자 하는 자의 의뢰가 없이는 부여되지 아니한다. 한편, 기업의 신용은 위탁 급식의 지속적인 운영이나 생산물 배상책임 능력 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주)아워홈은 신용평가회사에게 자기의 기업신용 평가를 의뢰한 사실이 없어 당연히 기업신용등급 자체를 부여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는 바, 피심인이 (주)아워홈의 기업신용등급을 '無'라고 표기한 행위는 (주)아워홈과 거래하고 있거나 또는 거래하고자 하는 고객으로 하여금 마치 (주)아워홈이 경영상 문제が 있어 기업신용등급을 부여받을 수 없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첫째 (주)아워홈의 기업신용등급을 '無'로 표기한 것은 공개된 기업신용등급이 없다는 사실을 그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동일 면에 기업신용등급의 세부 내용과 그 의미를 함께 기재하였으므로 한국외환은행(주), 영풍(주), 한국공항공사 등 3사(이하 "고객 3사"라 한다)로 하여금 (주)아워홈의 기업 신뢰도나 경영상황이 현저히 불량하거나 곤란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없으며, '기업신용등급 無'라는 표현이 기업신용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기업신용등급이 특정사유로 비공개되어 불가피하게 이를 파악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주)아워홈이 위탁급식 시장에서 1위 사업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아워홈의 기업신용등급을 '無'로 표기한다 해도 고객 3사로 하여금 (주)아워홈이 하위의 기업신용등급을 부여 받았거나 (주)아워홈의 기업 신뢰도가 현저히 불량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심인이 자기의 위탁급식 용역의 내용과 관련하여 경쟁사업자에 비해 우량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그 신뢰도를 더할 수 있을 것인 바, 피심인이 기업신용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업신용등급 이외에 기업어음신용등급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자기의 기업신용등급은 존재하고 (주)아워홈의 기업신용등급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주)아워홈의 객관적 기업신용등급은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기업신용등급은 상호간을 비교하는 객관적인 비교 지표로 사용되기에 적합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기업신용등급을 'AA', (주)아워홈의 기업신용등급을 '無'로 비교하여 표기한 것을 보면 피심인에게는 고객으로 하여금 (주)아워홈의 기업신뢰도가 자기의 그것에 비해 현저히 불량한 것처럼 오인하게 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이 사건에서와 같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급식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문서의 '기업신용등급 無'라는 의미가 객관적으로 정확히 확인되기보다는 상식적인 선에서 바로 선정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문서에서 '기업신용등급 無'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고객으로 하여금 자기와 거래하도록 오인하게 하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심인은 이 사건 문서 16쪽에서 피심인의 최근 5년간 위생사고 건수를 0건으로 표기하고, (주)아워홈은 '09년 8월 – 용인 성지고 식중독 사고'라고 표기한 후 그와 관련된 신문기사(2009. 6. 30. 푸드투데이 – 용인 성지고교서 31명 집단 식중독 증세)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위 식중독 사건의 관할관청인 기흥구청이 (주)아워홈에게 발송한 문서에 의하면, 기흥구청은 (주)아워홈의 보존식이나 식수, 환경가검물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주)아워홈이 제공한 음식물과 식중독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주)아워홈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울러 위 식중독 사건의 근거 기사를 게재한 '푸드투데이'가 2009. 7. 10. 후속기사를 통해 위 식중독 사건의 원인이 뚜렷하게 규명되지 않았고 관할 보건소가 그러한 내용을 성지고등학교에 전달하였다고 보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 사건 문서에서 2009. 6. 30. 위 식중독 사건이 보도된 기사만을 발췌하여 게재함으로써, (주)아워홈과 거래하고 있거나 또는 거래하고자 하는 고객으로 하여금 마치 (주)아워홈이 위 식중독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인터넷 기사를 검색한 결과 눈에 띈 당해 위생사고 관련 기사를 발췌하여 이 사건 문서에 게재하였던 것이고 위 사고가 원인불명으로 판명되었다는 내용의 후속기사를 별도로 반영하지 않았다하여 고객을 오인시키려는 목적이나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고객을 오인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피심인에게 유리하도록 관련 기사의 일부를 수정하였을 것이지만 관련 기사의 요지를 그대로 스크랩하여 이 사건 문서에 게재한 것으로 볼 때 피심인에게는 기만 또는 위계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위탁급식 용역의 특성상 위생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피심인이 과거의 신문기사 자료 중 (주)아워홈에게 불리한 내용만을 발췌하여 이 사건 문서에 게재함에 따라 고객으로 하여금 (주)아워홈의 위생 안전성이 피심인에 비해 현저히 불량하다는 인식이 형성될 가능성이 큰 점,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인 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고객의 구매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심인은 이 사건 문서 21쪽에서 생물 식자재의 장점과 전처리 식자재의 단점만을 대비하여 적시하면서, 단점만이 적시된 전처리 식자재의 사용비율에 대해 피심인은 10%인 반면, (주)아워홈은 50%라고 명시하였다. 우선, 피심인이 이 사건 문서에 기재한 생물 식자재의 장점과 전처리 식자재의 단점은 대부분 그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피심인이 장점만을 적시한 생물 식자재의 경우 단점이 있을 수 있고, 피심인이 단점만을 적시한 전처리 식자재의 경우 장점도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위와 같이 자기가 주로 사용하는 생물 식자재의 장점과 (주)아워홈이 주로 사용하는 전처리 식자재의 단점만을 대비한 행위는 경쟁사업자와 거래하고 있거나 또는 거래하고자 하는 고객으로 하여금 경쟁사업자의 위탁급식 용역의 내용 등이 피심인의 위탁급식 용역에 비해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생물 식자재가 전처리 식자재에 비해 보다 신선하고, 식사메뉴의 특성에 맞게 조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인 바, 위탁급식사업자가 생물 식자재와 전처리 식자재 간을 비교함에 있어서도 고객의 입장에서 서술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심인이 이와 같이 고객의 입장에서 생물 식자재의 장점을 부각시킨 것을 두고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이 사건 문서에 기재한 생물 식자재의 장점과 전처리 식자재의 단점은 대부분 그 근거가 없거나 부족하고, 가사 피심인이 기재한 내용이 사실이라 해도 생물 식자재와 전처리 식자재는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어느 것이 더 우수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 사건 문서에서 자기가 주로 사용하는 생물 식자재가 (주)아워홈 등 경쟁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처리 식자재에 비해 현저히 우량하다고 하거나 (주)아워홈 등 경쟁사업자의 전처리 식자재가 자기의 생물 식자재에 비해 현저히 불량한 것처럼 기재하고 있는 바,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심인은, 고객 3사가 이미 피심인과 거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이들 각사를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대상이 되는 '경쟁사업자의 고객'으로 보기 어렵고, 가사 이 사건 문서의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고객이 '잘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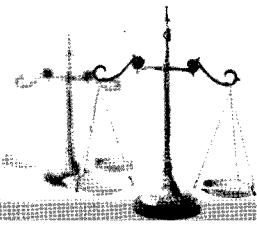
공정위 주요 심결사례

된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하더라도 이미 피심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이상 '해당 거래에 유인되었는지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는 바, 이 사건 문서는 피심인이 고객 3사의 담당 직원에게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설명 자료에 불과하고, 특히 영풍(주)의 경우 위탁급식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던 중 자사의 신축사옥에 식당을 설치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위탁급식 사업자를 선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는 바 (주)아워홈과의 관계에서는 잠재적인 고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심인은, 피심인이 고객 3사의 위탁급식 사업자로 사전 내정되었다는 주장만 할 뿐 이와 관련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는 고객의 실제 유인 여부와 관계없이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의한 유인행위, 그로 인한 유인 가능성 존재 자체만으로 성립하는 점, 더 나아가 피심인이 이 사건 문서를 2010년 3월 한국외환은행(주)에 송부하고, 2010년 8월경에 한국외환은행(주)와 사이에 위탁급식계약이 체결되어 약 5개월간의 간극이 있어, 이 사건 문서의 송부 당시 한국외환은행(주)가 내부 방침으로 피심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가사 한국외환은행(주)가 피심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후 이 사건 문서를 송부 받았다 하더라도 피심인이 이 사건 문서에 게재한 자료의 내용이나 (주)아워홈 등 경쟁사업자의 영업활동 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위탁급식 사업자가 피심인에서 경쟁사업자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이 사건 문서가 송부된 시점이 2010년 8월경이고 재계약 시점이 2010년 11월경으로 약 3개월간의 기간 차이가 있는 점, 그리고 한국공항공사의 공공기관적 특성으로 보면 사전에 위탁급식사업자를 내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위탁급식사업자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재계약을 추진할 경우에도 경쟁사업자가 위탁급식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없다면 굳이 피심인이 이 사건 문서와 같이 경쟁사업자와의 비교자료를 게재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영풍(주)의 경우 신축사옥에 식당을 설치하지 않게 되어 사후적으로 위탁급식 사업자 선정의 필요성이 없게 되었지만 이는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피심인이 이 사건 문서를 영풍(주)에 송부할 당시는 영풍(주)는 위탁급식 사업자 선정을 진행 중이었으며, 피심인은 이 사건 문서를 2010년 3월경 영풍(주)의 위탁급식 사업자 선정을 진행하고 있던 영풍(주)의 정○○에게 송부한 점, 영풍(주)는 피심인의 이 사건 문서를 영풍(주)과 위탁급식 사업 상담을 진행 중이던 (주)아워홈의 개발팀 조○○에게 제공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문서 송부 당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로 고객의 실제 유인 여부에 관계없이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의한 유인행위 및 그로 인한 유인 가능성이 있었던 점이 쉽사리 인정되는 바, 이러한 모든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고객으로 하여금 자기와 거래하도록 오인하게 하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따라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심인의 위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4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위반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조치내용

피심인은 위탁급식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업자의 기업신용등급이 매우 낮거나 혹은 위생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경쟁사업자가 사용하는 식자재의 단점과 자기가 사용하는 식자재의 장점만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위탁급식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이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킴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당한 공동행위

7.18.

건설사 입찰 관련 3개 건설용 볼트·너트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11카조1594)

▶ 위반내용

2003년 2월 피심인들 및 유성금속의 영업담당자들은 출혈경쟁을 막기 위하여 서울 구로구의 한식집에서 만나 건설사가 구매 입찰하는 이 사건 제품의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순차적(케이피에프 — 동아건설 — 오리엔스 — 유성금속 순서)으로 낙찰받기로 합의하였다. 피심인들은 위 1차 합의에 따라 2003. 2. 28. 남광토건이 입찰한 '낙풍3교 건설' 건에서 유선 연락을 통해 케이피에프를 낙찰자로 정하고, 동아건설이 케이피에프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 케이피에프가 낙찰 받게 함으로써 1차 합의를 최초로 실행하였다. 피심인들은 2003년 2월 ~ 2006. 8. 25. 까지 남광토건, 현대미포, 케이씨씨건설, 금호에스티 등 건설사가 입찰한 총 87건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건설사 입찰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당초의 합의가 이행되지 못하고 피심인들 사이에 이탈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다가, 2006년 8월 대우에스티가 입찰한 건에서 동아건설이 당초 합의된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견적서를 추가 제출함으로써 1차 합의에 따라 낙찰받기로 되어 있던 케이피에프가 본 입찰에서 탈락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케이피에프가 공동행위 중단을 선언하였고 2006. 8. 25. 케이씨씨건설이 입찰한 '봉선3교' 건을 마지막으로 피심인들 간의 1차 공동행위가 종료되었고 이후 2008년 1월까지 건설사의 입찰에 대하여 피심인들 사이 경쟁에 의한 낙찰이 이루어 졌다. 공동행위 중단 기간 전후의 이 사건 제품의 원재료 가격과 직접 시장에서의 판매가격의 주이는 1차 공동행위가 종료되어 경쟁 입찰이 본격화된 2007년 하반기 원재료 단가는 2007년 상반기에 비해 약 44원 상승했음에도 판매가격은 약 189원 하락하였으나, 2차 공동행위가 시작된 2008년 상반기에는 2007년 하반기에 비해 원재료 단가는 176원 상승하자 판매가격은 192원 상승하여 공동행위 중단시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3년 2월 피심인들의 영업담당자들은 1년 반에 걸친 경쟁으로 이윤이 감소되고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다시 공동행위를 시작할 필요성이 발생하자 서울 구로구 구로상사 인근 일식집(북해도)에서 만나 1차 합의와 동일하게 건설사의 구매 입찰 건에 대하여 피심인들이 순차적으로 낙찰 받는 방식으로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2차 합의 후 화성산업이 2008. 2. 10. 수원·인천 복선전철 등 4개 건에 대하여 피심인들에게 이 사건 제품의 견적서 제출을 요청하자 케이피에프 영업부장 이○○와 동아건설 영업부장 김○○는 유선 연락을 통해 입찰 물량이 많은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은 케이피에프가, 상대적으로 입찰 물량이 적은 나머지 3개 건은 동아건설이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이를 각각 낙찰 받았다. 피심인들은 2008년 2월 ~ 2009년 10월까지 남광토건, 현대미포, 케이씨씨건설, 금호에스티 등 건설사가 입찰한 총 44건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2009년 7월과 9월 공동행위 참가자였던 동아건설의 김○○ 부장과 김○○ 서울사무소 소장이 각각 퇴사하자 새로운 영업담당자인 이○○ 부장이 업무를 인계받는 과정에서 2차 합의를 위반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2009. 10. 30. 금호에스티가 입찰한 '중앙선전동차(용문교)' 건을 마지막으로 2차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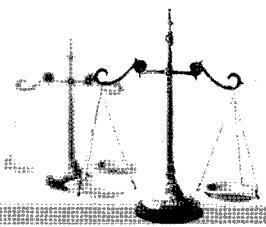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사이에 공동으로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를 하기로 하는 합의, 즉 '의사의 합치' 또는 '의사의 연락'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의사의 합치' 또는 '의사의 연락'이라 함은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암묵적 요해 내지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들이 2003년 2월과 2008년 1월 각각 영업담당자간 모임을 통해 이 사건 제품의 건설사 입찰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낙찰 받음으로써 입찰 물량을 균등하게 배



공정위 주요 심결사례

분하기로 합의하고 개별 입찰 건별로 사전에 투찰가격을 정하는 등 총 131건의 입찰에서 실행에 옮겼음이 명백하다. 이는 이 사건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생산 또는 거래를 제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에 해당한다. 아울러 건설사가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최저가 낙찰제'였음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 내부에서 낙찰예정자로 정해져 있던 사업자가 실제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낙찰예정자의 투찰가격이 다른 사업자의 투찰가격에 비해 반드시 낮아야 하는 바, 피심인들이 투찰가격에 대해서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에서 살펴 본 합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기로 한 합의'에도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합의와 같이 사업자들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여러 종류의 합의를 수회 계속한 경우, 전체를 하나의 합의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별 합의로 분리하여 수개의 합의가 독자적으로 성립·소멸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기본적 원칙에 대한 합의가 있거나 이러한 합의가 없더라도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실행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다. 위 원칙과 다음 사항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1차 공동행위 및 2차 공동행위는 각각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첫째, 2003년 2월 합의와 2008년 1월 합의는 각각 건설사의 입찰이 있는 경우 피심인들간 경쟁을 막고 최대한의 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1차 공동행위와 2차 공동행위의 기본합의로 볼 수 있고 개별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정한 행위는 각각 기본합의를 실행한 것에 해당한다. 둘째, 피심인들이 위반행위 기간 동안 피심인들 간의 경쟁을 회피하려는 의사나 목적이 달라지지 아니하였고, 각 합의의 대상도 건설사의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입찰이라는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셋째, 각 합의의 실행과정에서 당초 합의한 사항대로 완벽하게 실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합의의 근본은 훼손됨이 없이 1, 2차 공동행위가 각각 종결될 때까지 연속적으로 실행되었다. 다만 2006년 8월에서 2008년 1월까지의 기간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차 공동행위와 2차 공동행위 사이의 위반행위가 중단된 기간이므로 1차 공동행위와 2차 공동행위는 각각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이루는 것이고 양자를 합쳐 하나의 공동행위로 보지는 아니한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심인들의 이 사건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사실상 100%에 달하는 점, 피심인들이 1차 공동행위를 종료한 2006년 8월부터 2008년 1월 사이에는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격이 하락하였다는 점, 이 사건 공동행위는 건설사의 교량 건설비용 증가와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도로공사 등의 비용 증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일반 소비자의 피해로 연결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동행위는 건설용 블트·너트 입찰 시장의 경쟁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피심인들의 위의 행위는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1차 공동행위는 2003년 2월에 있었던 기본합의로 시작되어 마지막 실행행위가 있었던 2006. 8. 25. 종료되었다. 따라서 1차 공동행위에 적용되는 법률은 이 사건 행위가 종료된 2006. 8. 25. 시행되고 있었던 2006년 법이어야 하나, 2006년 법의 종전규정인 법(2005. 3. 31. 법률 제749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05년 법"이라 한다)의 부칙 제8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에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법률 제8631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법률 제8631호의 공포일은 2007. 8. 3.으로서 1차 공동행위의 종료일 이전이므로 1차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에는 2005년 법의 종전규정인 법(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02년 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경우 1차 공동행위 종료일에 시행중이던 고시(2005. 4.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3호, 이하 "2005년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야 하나, 2005년 고시의 부칙 제2조에는 "이 고시 시행일 전의 행위로서 이 고시 시행 후에도 위반상태가 지속되는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1차 공동행위는 2005년 고시의 시행일인 2005. 4. 1. 이전에 시작되었으므로 1차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에는 2005년 고시의 종전규정인 고시(2004. 4. 1. 공



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4-7호, 이하 "2004년 고시"라 한다)를 적용한다. 다만 과징금 고시가 2010. 10. 20. 개정되면서 피심인에게 유리한 규정의 경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2010. 10. 20. 개정된 고시(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 이하 "현행 고시"라 한다)를 적용한다. 2차 공동행위는 2008년 1월에 시작되어 2009. 10. 30.에 종료되었으므로 2차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이 사건 행위가 종료된 2009. 10. 30. 시행되고 있었던 현행법을 적용한다.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경우 2차 공동행위 종료일에 시행 중이던 고시(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36호, 이하 "2009년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되, 피심인에게 유리한 규정의 경우 현행 고시를 소급하여 적용한다. 건설용 볼트·너트 입찰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에 달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가 경쟁을 저해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인정되므로 향후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하고,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2004년 고시 III. 1. 나. (1) 및 III.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동아건설의 경우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하던 창원볼트공장을 2011. 1. 31. 영업양도 방식으로 진성씨앤아이에 매각하여 현재는 볼트·너트 제조·판매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향후 법위반 재발 가능성성이 낮으므로 시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 하기로 한다.

피심인들의 위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21조를, 과징금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2조를, 자진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법 제22조의2를 각 적용한다.

▶ 조치내용

피심인 오리엔스금속 주식회사는 건설사가 건설용 볼트·너트를 구매 입찰함에 있어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건설용 볼트·너트의 입찰 물량을 배분함으로써 건설용 볼트·너트 입찰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심인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와 오리엔스금속 주식회사는 각각 71,000,000원과 16,000,000원의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피심인 주식회사 케이피에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면제한다.

사업자단체금지행위

7.21.

광주콜사모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2011광사1141)

▶ 위반내용

피심인은 2010. 2. 18. 영광오리팅(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소재)에서 개최된 월례모임에서 2010. 2. 25.부터 대리운전 콜수수료를 3,0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다. 이후, 피심인의 당시 회장 주○○과 총무 한○○은 3개 대리운전 프로그램별 회의를 개최하여 각 구성사업자들에게 피심인의 2010. 2. 18. 자 결의사항을 통보하였고, 각 구성사업자들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대리운전 프로그램의 메시지 등을 통하여 대리운전기사들에게 이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 이후,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은 2010. 2. 18. ~ 2011. 3. 2. 기간 동안 대리운전 콜수수료를 3,000원으로 인상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의 구성사업자 흥길동 대리운전의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심인이 대리운전 콜수수료를 3,000원으로 인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피심인 전 회장 주○○(행위 당시 회장임)도 이 사건 심의절차에서의 잔술에서 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점으로 볼 때, 피심인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의 콜수수료 인상내역 자료에 의하면,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이 실제 피심인의 결정에 따라 2010. 2. 18. ~ 2011. 3. 31. 기간 동안



공정위 주요 심결사례

대리운전 콜수수료를 3,000원으로 인상한 사실로 볼 때, 피심인의 위의 행위는 구성 사업자들의 가격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된다.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은 각각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시장의 수급상황, 자신의 영업전략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대리운전 요금 및 대리기사와의 콜수수료 등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광주지역 대리운전 시장의 약 6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피심인이 광주지역 대리운전 콜수수료를 3,000원으로 결정하여 자신의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일률적으로 인상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여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이 대리운전 콜수수료를 일제히 3,000원으로 인상한 점으로 볼 때, 피심인의 위의 행위는 광주지역 대리운전업 분야의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피심인은 위의 행위사실과 관련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심인의 위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로 해당되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인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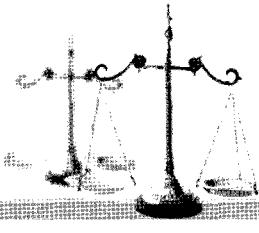
피심인은 2009. 12. 25. 경 낙지전문점에서 개최된 월례모임에서 동일 대리운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업자간 대리운전기사 이동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의 전 회장 주○○은 구성사업자들에게 피심인의 2009. 12. 25.자 결의사항을 통보하였고, 이에 구성사업자들은 대리운전 프로그램의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대리운전기사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 사실이 있다. 이후, 인성데이터(주)의 대리운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비타민연합대리운전은 동일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자사에서 퇴사한 20명의 대리기사 현황을 팩스로 발송하여 향후 신규 등록을 거부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의 구성사업자 흥길동 대리운전의 메시지 내용 및 비타민 연합대리운전의 공문 내용에 의하면, 피심인이 동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업자간 대리운전기사 이동을 금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자신의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피심인 전 회장 주○○도 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점으로 볼 때, 피심인의 의사 및 표시가 존재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은 각각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시장의 수급상황, 자신의 영업전략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대리운전 기사를 모집할 수 있어야 한다. 광주지역 대리운전 시장의 약 6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피심인이 자신의 구성사업자들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동일 대리운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업자간 대리운전기사 이동금지를 결정하여 자신의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이행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여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이 동일 대리운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업자간 대리운전기사 이동을 금지한 사실로 볼 때, 피심인의 위의 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피심인은 위의 행위사실과 관련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심인의 위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 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인정된다.

피심인의 위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인정되며, 위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 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인정되므로 각각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조치내용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대리운전 콜수수료를 결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대리운전업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심인이 결정한 대리운전 콜수수료를 파기하여야 한다. 피심인은 구성사업자에게 동일 대리운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업자간 대리운전기사 이동을 금지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피심인은 위의 내용을 이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하도급법

7.19

동한건설(합)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0전사3212)

▶ 위반내용

피심인은 2008. 8. 7. 우정건설에게 '대한불교 임제종 국원사 리모델링 공사 중 진입로 공사(토공사외)'를 1,200백만 원에 건설위탁하였다. 한편 피심인은 위 계약 체결 전인 2008. 7. 31. 발주자인 대한불교 임제종 국원사 대표 최OO, 수급사업자인 우정건설 대리인 권OO와, 피심인이 우정건설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중 준공 후 우선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30%를 발주자인 국원사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심인은 2009. 4. 13. 우정건설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하였으나, 발주자인 국원사가 우정건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360백만 원($= 1,200백만 원 \times 0.3$)을 제외한 하도급 대금 840백만 원($= 1,200백만 원 - 360백만 원$)을 목적물을 수령일(인수일)로부터 60일(2009. 6. 12.) 이내에 우정건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목적물 인수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심인은 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인수 후 60일이 지나도록 발주자인 국원사가 수급사업자인 우정건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360백만 원(하도급 대금 1,200백만 원의 30%)을 제외한 나머지 하도급 대금 840백만 원($= 1,200백만 원 - 360백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심인은 우정건설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840백만 원과 이 금액에 대한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2009. 6. 13.부터 '선급금 등 자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른 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피심인의 위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13조 제8항,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각 적용한다.

▶ 조치내용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우정건설 주식회사에게 '대한불교 임제종 국원사 리모델링 공사 중 진입로 공사(토공사외)'의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840,000,000원 및 이 금원에 대한 2009. 6. 13.부터 2009. 9. 14.까지는 연 25%, 2009. 9. 15.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표시·광고법

7.26

(주)십사일동안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2011서소1056)

▶ 위반내용

피심인은 2011. 1. 17. 무료일간지인 포커스신문, 메트로신문, 시티신문을 통하여 "2005년 설립 이래 동종업계 제1지방
김량 1위"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2011. 2. 26.부터 같은 해 3. 15.까지 자신의 홈페이지의



공정위 주요 심결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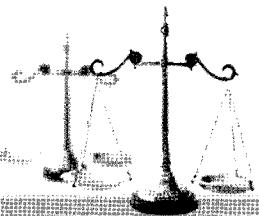
판언창 및 공지사항을 통하여 “[E-Biz 브랜드 대상] 다이어트 체지방 감량 부문 No.1, ‘14일 동안’, “다이어트 체지방 감량 부문 No.1 수상”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따라서 허위·과장 광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허위·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심인은 위 행위사실의 근거로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자기가 행한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함에도 실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이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행위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으로 허위·과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비만관리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다이어트업체의 수도 급증하고 있고 다이어트업체들이 고안한 비만관리 방법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각종 다이어트업체 이용자들의 체지방감량의 정도를 비교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신문이나 홈페이지 등에 표기한 광고내용을 통하여 당해 업체의 체지방 감량의 정도에 관한 정보를 접하게 되며 이와 관련된 사실 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찾아보기보다는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를 접할 경우, 피심인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다른 업체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에 비하여 체지방 감량효과가 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소비자가 다이어트 업체를 선택함에 있어 체지방 감량의 정도는 구매선택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시키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심인은 자신이 YTN으로부터 E-Biz 브랜드 대상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No.1”의 의미는 “1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등의 의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E-Biz 브랜드 대상] 다이어트 체지방 감량 부문 No.1”이라는 표현을 접할 경우 피심인이 다른 다이어트 업체들과 비교하였을 때 체지방 감량 부문에서 확고한 우위에 있어 당해 브랜드 대상을 받은 것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해 브랜드 대상은 YTN 홈페이지에서 소비자들이 피심인의 상품성·편리성·콘텐츠·서비스·디자인 부문에 대하여 점수를 매기는 절차를 거쳐서 피심인의 브랜드에 대하여 수여되는 것일 뿐 체지방 감량 부문에 대하여 정확한 설문조사 또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것에 근거하여 수여되는 것이 아닌 바, 피심인이 “체지방 감량 부문”에서 1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당해 표현에는 허위·과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비만관리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다이어트업체의 수도 급증하고 있고 다이어트업체들이 고안한 비만관리 방법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각종 다이어트업체 이용자들의 체지방감량의 정도를 비교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신문이나 홈페이지 등에 표기한 광고내용을 통하여 당해 업체의 체지방 감량의 정도에 관한 정보를 접하게 되며 이와 관련된 사실 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찾아보기보다는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를 접할 경우, 피심인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다른 업체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에 비하여 체지방 감량효과가 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소비자가 다이어트 업체를 선택함에 있어 상대적인 체지방 감량의 정도는 구매선택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시키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심인의 위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조치내용

피심인은 자신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없이, “2005년 설립 이래 동종업계 체지방 김량 1위” 또는 “다이어트 체지방 김량 부문 No.1”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함으로써 자신이 체지방김량 부문에서 다른 사업자보다 현저히 우위에 있어 마치 1위에 해당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맹사업법

7.21.

(주)케빈스크림도넛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2011구사0164)

▶ 위반내용

피심인은 2009. 5. 7. ~ 2010. 9. 6. 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면서, 동아쇼핑점 등 8개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를 제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에게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 예치가맹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한 것이어야 한다.

피심인이 각 가맹점으로부터 500만 원씩 총액 4,000만 원을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법 제2조 제6호 가목에서 정의하는 가맹금에 해당한다. 또한 피심인은 8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 대상 가맹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오픈일 전에 직접 수령하였다. 피심인이 8개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로부터 총 4,000만 원의 예치대상 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심인은 2009. 5. 7. ~ 2010. 9. 6. 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동아쇼핑점 등 8개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한편, 피심인은 2010. 8. 30. 공정거래위원회에 ‘케빈스크림도넛’ 정보공개서를 등록 신청을 하였고, 2010. 9. 7.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공문과 등록증을 송부하였다.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제공한 날로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즉 정보공개서를 미등록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정보공개서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법 위반에 해당한다.

피심인이 운영하는 케빈스크림도넛은 2010. 9. 7. 정보공개서 등록 완료되었으므로, 피심인이 2009. 5. 7. ~ 2010. 9. 6. 기간 동안 8개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는 정보공개서 미등록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피심인은 2009. 5. 7. ~ 2010. 9. 6. 기간 동안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8개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공정위 주요 심결사례

피심인의 위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조치내용

피심인은 가맹회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기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예치기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심인은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가맹회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면서 가맹회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회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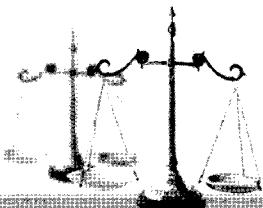
**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2011전자0897)**

▶ 위반내용

피심인의 직원인 최○○의 확인서와 피심인 사이버몰의 판매 안내페이지 출력물, 피심인 이용약관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사이버몰 '쿠팡'에서 2010. 8. 10.부터 2011. 2. 14.까지 '줌리드헤드셋'을 포함한 371개의 재화 및 서비스 쿠폰을 판매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 쿠폰의 판매 안내페이지와 이용약관에 계약기간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2010. 8. 10.부터 2011. 2. 10.까지 표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해제 방해 행위"라 한다).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허위사실을 알려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는 첫째, 소비자에게 허위사실을 알려야 하고 둘째, 그러한 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계약해제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된다. 첫째, 법 제17조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계약해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주문의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고 표시하였는 바,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에게 허위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둘째, 위의 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주문의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한 것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계약해제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심인의 위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사실을 알려 계약해제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심인은 2010. 12. 16. 사이버몰 '쿠팡'을 통해 '작은차이 미용실'의 헤어관리 서비스쿠폰을 판매하면서 "헤어커트3회 또는 일반펌 + 영양앰플 115,000원 → 39,000원(66%)"라고 광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비자 유인 · 거래행위"라 한다). 또한 위의 "이 사건 계약해제 방해 행위" 및 "이 사건 소비자 유인 · 거래 행위"를 모두 일컬어 "이 사건 행위"라 한다.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허위사실을 통한 소비자 유인 · 거래 행위는 첫째, 소비자에게 허위사실을 알려야 하고 둘째, 그러한 행위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경우 성립한다. 첫째, 피심인이 제출한 '작은차이 미용실'의 기준가격표를 살펴보면 헤어커트의 가격은 여성이 22,000원, 남성은 17,600원으로 남 · 여 헤어커트 3회의 가격은 각각 66,000원과 52,800원이다. 그러나 피심인은 헤어커트 3회의 기준가격을 '115,000원'으로 표시하여 할인 전 기준가격을 부풀려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할인가격을 '39,000원(66%)'과 같이 표시하여 실제 할인율이 41% 또는 27%에 불과함에도 할인율이 66%인 것처럼 표시하였는데, 이는 소비자에게 허위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둘째, 광고



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기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피심인은 위의 행위를 통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청약하도록 유인하였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201명의 소비자가 서비스 쿠폰을 구매하였으므로, 이 행위는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심인의 위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이 형성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할 때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또한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한 효과가 심의일 현재에도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계속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표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이 사건 계약해제 방해 행위 및 소비자 유인·거래 행위는 각각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법 시행령(2011. 1. 28. 대통령령 제22648호로 개정되어 2011. 1. 28.부터 시행된 것) 제42조 및 별표 2. 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금액인 5백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기로 한다.

피심인의 위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과태료에 대하여는 법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조치내용

피심인 포워드벤처스엘엘씨(Forward Ventures, LLC)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판매안내 페이지 및 이용약관에 공동구매 목표인원이 충족되어 공동구매가 성사될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주문의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고 표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계약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심인 포워드벤처스엘엘씨(Forward Ventures, LLC)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서비스 쿠폰의 할인율을 사실과 다르게 높게 광고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심인 포워드벤처스엘엘씨(Forward Ventures, LLC)는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coupang.co.kr, www.coupang.com)에 전체화면의 1/6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3일간 공표하여야 한다. 피심인 포워드벤처스엘엘씨(Forward Ventures, LLC)는 과태료 10,000,000원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